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5
----------	------

제안일자 : 2023. 11. 16.

제안자 :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장

1. 위원회안의 제안경위

- 제321회 정례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2023.11.16.)는 옥재은 의원이 2023년 8월 14일에 발의하여 주택공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7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등 주택 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소라 의원이 2023년 8월 14일에 발의하여 주택공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를 토대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조정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 출산율 제고 및 양육환경에 놓여있는 가정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에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에서 주택을 임차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등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감하여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원회안의 주요내용

- 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1호의2 신설)
- 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1호의3 신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의3.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